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가합564268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54,64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99,95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투자계약의 체결 및 투자금 납입

1) 원고(2016. 1. 1.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5. 9. 25. 피고(2016. 7. 14. D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및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E과, 원고가 피고가 발행하는 신주 51,560주를 총 대금 999,954,640원(= 51,560주 × 주당 19,394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거래의 완결)

(1) 원고는 2015. 9. 25. 또는 피고와 원고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3조 소정의 선행 조건의 충족 또는 원고에 의한 면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지점의 계좌에 납입한다. 해당 거래 관련 인수대금이 위 계좌에 납입된 때 해당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날을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고 한다.

제4조(진술과 보장)

피고와 E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료 시까지 각자 별지 기재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6조(거래완결 전 해제)

(1) 이 사건 투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완결 전에 귀책 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a)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b) 일방 당사자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진술 및 보장 위반 포함) 상대방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c) 2015. 10. 15.까지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 사유로 거래완결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거나 원고가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본 조에 의한 계약해제 시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지명)

(1)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 1인 및 감사를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원고가 지명한 이사(이하 '원고 지명이사'라고 한다)는 피고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시 원고 및 원고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언제든지 원고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와 E은 이에 응하여 원고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원고 지명이사가 교체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사항에 대한 동의 및 협의권)

(1)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피고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d) 건당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5% 이상의 자산을 구매, 매각, 대체, 처분 등을 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피고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협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한다.

(a)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 주요안건

제11조(보고 및 자료 제출)

(1) 피고는 원고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제10조에 의한 통지 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 (a) 중요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 (b)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재산상의 주요변동사항이 있는 때
- (c)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 (d)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 (e)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 (f) 피고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 (g) 제10조에 정한 동의 및 협의 사항이 발생한 때
- (h)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제13조(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1)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 지명이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에서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포함 영업, 기술, 재무 담당 임원 및 원고 지명이사가 참석하여 피고의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가 참석하는 경영협의회를 분기 말에 개최하여 피고의 사업 전반 및 Value-add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원고의 주주총회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소집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투자계약과 피고의 정관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우선하고, 피고와 E은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부합하도록 정관의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추후 이 사건 투자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와 E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정관을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위반)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피고 또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제1조에 따라 인수한 보통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 또는 E은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의무를 부담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중요 자산이라 함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자산을 말한다.

(a) 제4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b) 피고 또는 E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2) 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 매수청구는 피고 또는 E에 대하여 매수대상 유가증권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이 해당 당사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자는 유가증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 매수에 있어서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당 유가증권 인수대금으로 한다.

(4) 본조에 의한 유가증권 매수청구는 원고의 피고 및/또는 E에 대한 면책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약벌 청구)

(1) 제1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또는 E은 원고의 해당 유가증권 인수가격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본 조에 따른 위약벌 지급일까지 연복리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배상한다.

제25조(완전한 합의)

이 사건 투자계약상 내용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별지 진술 및 보장]

피고와 E은 다음 기재사항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원고에게 제공된 피고의 2015. 6. 30.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고, 피고의 재무상태 및 영업 현황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피고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8조(실사 관련 자료)

피고는 원고 또는 그 실사 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피고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피고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1조(B 상표권에 관한 사항)

피고 및 E은 B의 상표권, 실용신안, 영업권 등 피고가 B의 상표로 영업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제한이 없고, 기타 세금이나 소송, 분쟁의 여지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E은 B의 상표권, 실용신안, 영업권 등 기타 B 브랜드를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피고와 E, 원고 사이에 달리 합의한 날에 피고의 소유로 1,000,000,000원에 이전 완료하는 것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2) 원고는 2015. 10. 7.까지 피고에게 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2015. 10. 8. 발행된 피고의 신주 61,870주 중 51,5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사내이사의 취임 등

F은 2015. 9. 25.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2. 25. 해임되었고, G는 2015. 9. 25.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28. 피고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매수청구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 지명이사인 F을 피고의 이사회에서 배제하고 피고의 재무 및 자금 등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동의 없이 F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밟은 바 없이 B 상표권을 1,000,000,000원에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과 다르게 피고의 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9.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 을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E이 이 사건 투자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수청구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매매대금으로 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해 위 매매대금 999,954,64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에서 피고 또는 E이 이 사건 투자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와 E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조항 중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뜻옵선

조항'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풋옵션 조항은 피고가 신주인수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원고에게 피고 또는 E이 이 사건 투자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주금을 환급해 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자본의 회수를 보장하고 다른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0나124153 판결 등 참조).

② 상법은 제341조, 제341조의2에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 사건 풋옵션 조항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41조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취득방법은 피고와 같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등(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가능이익으로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41조의2 제4호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이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상법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등)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풋옵션 조항과 같이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풋옵션 조항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에서 정한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 제15조에 기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에 대하여 거래완결일인 2015. 10. 7.로부터 위약벌 지급완료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b), 제8조, 제13조

피고는 원고 지명이사인 F을 피고의 이사회에서 배제하고 피고의 재무 및 자금 등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F을 원고 지명이사로 계속 유지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2015. 12. 25. F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이후 원고가 새로 지명한 H을 원고 지명이사로 교체해 주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b), 제10조, 제11조

피고는 2015. 11. 말경 원고에게 어떠한 통지를 하거나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밟은 바 없이 B 상표권을 1,0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a), 제4조, 별지 제8조

E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투자금 600,000,000원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피고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1,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위 약속을 반영하여 피고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와 E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진술 및 보장하였다. 그런데 E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 약속을 반영하여 작성된 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실제 피고의 재무상태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되었고, 결국 피고 또는 E은 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진술 및 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F이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1인의 이사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원고가 지명한 또 다른 사내이사인 G가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지명이사를 선임해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B 상표권을 1,000,000,000원에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의 상표권 가치만을 믿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원고에게 피고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b), 제8조, 제13조 사유 해당 여부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 1인 및 감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5.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 등기임원

1인에 대한 지명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도 등기임원 1인에 대한 지명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와 I가 협의하여 총 1인의 등기임원 지명권한을 가진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 측의 F과 I의 대표이사인 G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5. 9.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5. 10. 8. F과 G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2인을 등기임원으로 등재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6. 1. 6.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2016. 1. 8. F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 6., 2016. 2. 2. 및 2016. 3. 18. 피고에게 원고 지명이사를 H로 교체하기 원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F의 사내이사직 해임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G는 2016. 1. 28.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사내이사직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E은 이를 반려했다.

(사) 피고의 2016. 3. 31.자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있자 원고는 H을 이사로, F을 감사로 선임하는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위 의안은 E 등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2, 3, 9, 10, 12,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과 I의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총 2명을

원고 지명이사로 등기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F을 해임하는 결의를 거쳐 해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G가 사내이사직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가 이사를 H로, 감사를 F으로 선임하기를 원하였다면, 피고와 E로서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 지명이사를 G에서 H로 교체하여 선임하고 F을 감사로 선임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가 제출한 위 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b) 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b), 제10조, 제11조 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투자계약 제10조에서 피고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5% 이상의 자산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5. 10.경 피고의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1,000,000,000원 상당의 B 상표권을 양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가 B 상표권을 1,000,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논의한 사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별지 1(진술 및 보장)에서도 피고와 E이 피고가 B 상표권을 1,000,000,000원에 양수하는 것에 대해 진술하고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가 B 상표권을 1,000,000,000원에 양수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합의한 대로 B 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다시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a), 제4조, 별지 제8조 사유 해당 여부

(1) 인정 사실

(가) J회계법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인 2015. 9. 11.경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재무실사를

위임받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제출한 매출 및 자산 현황 등의 재무자료에 근거한 자산 중 K연구소에 투자한 500,000,000원과 중국지사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한 100,000,000원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E은 개인적으로 위 각 투자금의 회수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자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1,000,000,000원으로 확정하되 그 중 500,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J회계법인에 제출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이에 J회계법인은 2015. 9. 25. 원고에게 위 약속의 이행을 전제로 위 각 투자금을 기타유동자산 121,161,000원 및 투자자산 500,000,000원으로, 위 대여금을 비유동부채 557,303,000원으로 반영한 피고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15. 6. 30. 기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E은 2015. 9. 25. 원고와 J회계법인에 자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500,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J회계법인의 실사 담당 회계사로부터 위 각 투자금의 회수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8, 10 내지 22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확약서 제출 약정 체결 경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J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료일(2015. 10. 7.) 현재 피고가 제출한 2015. 6. 30. 기준 재무제표 등이 피고의 재무상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E이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점,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실사를 담당한 J회계법인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원고 주장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약속한 내용에 관한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a)에서 정한 '제4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E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원고 지명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b)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999,954,640원에 대하여 거래완결일인 2015. 10. 7.부터 그 지급완료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감액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지는데,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피고 또는 E이 이 사건 투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 또는 E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위 주식매수청구는 피고 또는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않고, 피고 또는 E은 원고에게 위약벌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위약벌 지급완료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투자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라 계약해제 시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 제15조는 피고 또는 E이 그 귀책사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피고 또는 E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 제15조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약벌 약정의 무효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15조를 위약벌로 보더라도,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교하여 약정된 벌이 현저히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 제15조가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풋옵션 조항이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기준으로 한 위약벌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풋옵션 조항이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 제15조에서 이 사건 풋옵션 조항과 별도로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또는 E이 위약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투자계약 제14조 제1항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제15조에 기해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데에 장애가 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범 판사 이재경 판사 서청운